##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4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 강준현·김현정·김남근

이인영 · 황정아 · 강훈식

신장식 • 문진석 • 박상혁

이기헌 • 이강일 • 민병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이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 제35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술 탈취로 피소된 당사자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 침해 또는 손해 야기 행위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이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배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정위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안 제 22조제4항제1호).

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원이 이 법 위반사 실과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 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신설).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신고일부터 3년"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해당 사건이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 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조정절 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본문 중 "당사자에게"를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로, "손해의"를 "위반사실, 기술자료 침해 또는 손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가"를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 대상이 되는"을 "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의"로, "손해의"를 "해당 위반사실, 기술자료 침해 또는 손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가"를 "상대방 당사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1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4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	
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	1
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	
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u>신</u>	<u>신</u>
고일부터 3년 <단서 신설>	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해당 사건이 제2
	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차
	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2. (생략)

⑤ ~ ⑧ (생 략)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u>자가</u>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
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 기술자료 침해 또는
<u> 손해의</u>
②
<u>상대방 당사자 또</u>
는 공정거래위원장이
<u> </u>

-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 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u>자가</u>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

③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의
<u>해당 위반사</u>
실, 기술자료 침해 또는 손해의
,
4
<u>상대방 당사자가</u>

는 것	을 기대	대하기도	. 어려운	- 때
에는	신청인	]이 자료	로의 기	재로
증명さ	하려는	사실에	관한 🤻	주장
을 진	l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u>(5)</u>	제1항에	따른	제출명	병령을

⑤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1조를 준용한다.